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용훈)

-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 공원내 애국지사기념관, 전시관 등 공익성이 강한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전기·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이에 인접한 주차장 등 관련시설도 그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
- 그 내용을 검토한바,
  - 안중근의사 기념관, 윤봉길의사 기념관,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운동관련 기념관과 전시관의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그 시설에 인접한 주차장 등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관련단체의 운영난을 덜어줌으로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하고, 나아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
  - 현행 조례에서 이미 이들 시설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1. 9. 29 의원발의로 개정한 바 있으며
  - 이번 개정에서 제7조제1항제3호중 “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한다”라는 내용까지 삭제하는 것은 기념관들이 흑자운영인 상태에서도 공공요금을 지원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으로 재검토가 요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99
------	----

2002. 12.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12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02년 12월 2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환경관리실장 신동우)

가. 개정이유

- 여미지 식물원의 운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6. 7. 1 인상 이후 그동안 한번도 인상된 사례가 없는 입장료를 제주지역 유사 관광시설의 요금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일부 인상하고,
- 입장료에 부과해 온 제주도 관광진흥 부가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짐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골자

- 여미지 식물원의 입장료를 제주지역의 유사한 관광시설 요금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
  - 일 반 5,000원 → 6,000원,
  - 청소년·군경 3,800원 → 4,500원,
  - 노인·어린이 2,500원 → 3,000원으로 인상하고
-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공급가액의 2%를 제주도에 납부해온 관광진흥 부가금이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용훈)

- 제주관광 식물원 여미지의 입장료 인상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바,
- 여미지식물원의 입장료는 삼풍에서 인수시점인 '96. 7. 1부터 적용된 요금으로 그 동안 주변관광시설의 요금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. 그 예로 주변 유사한 식물원인 분재예술원의 경우 입장료 7,0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여미지식물원은 5,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2,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대부분의 주변관광시설이 금년도에 입장료를 12.5%~66.7%까지 인상하였음.
- 주변 관광시설과의 요금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특히 여미지식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향상과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의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여미지운영에 관한조례 별표 제1호 입장료란의 “관광진흥부가금은 공급가액의 2%임”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제41조의 관광진흥부가금 과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